# 건강검진 실시의무와 위반 시 즉시 과태료부과

#### 1. 서설

회사는 사무직근로자에 대해 2년에 1회, 비사무직근로자에 대해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 최근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관련 근로 감독 시 가장 쉽게 지적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전체 근로자 중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있거나일반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재검이 나와서 재검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수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하에서 일반건강검진관련 법규 및 과태료 부과내용과 재검에 대한 일반건강검진의무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### 2. 건강검진 관련 법규

#### 1)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(건강진단)

-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·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(이하 "건강진단기관"이라 한다)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.
-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## 2) 위반 시 벌칙 :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(과태료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Tel: (02) 2633-3633 Fax: (02) 2633-4249

- 5. 제43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
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
  태료를 부과한다.
  - 2. 제43조제3항을 위반한 자

## 3. 건강검진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대상자

;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관련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세부내용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ሳተዛ <del>ኛ</del>	1차	2차	3차이상
법 제43조제1항 전단을 위	법 제72조	건강진단 대상 근로자1명	5	10	15
반하여 건강진단을 하	제3항 제5호	당			
지 않은 경우					
근로자가 법 제43조제3	법 제72조		5	10	15
항을 위반하여 건강진	제5항 제2호				
단을 받지 않은 경우					

#### 1) 회사부과 과태료

3년 이내 건강진단 미실시 근로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또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첫 해에는 5만원, 두 번째 해는 10만원, 세 번째 해에는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

### 2) 근로자부과 과태료

과태료는 통상 회사에 부과되나 만약 회사의 수차례 건강진단에 대해 안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.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건강진단 안내 메일 및 통지서를 보냈다면 건강검진 미진단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.

## 3) 회사가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는 방법

회사가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으려면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건강검진 받을 것을 독려했다는 증빙자료(사업장 게시, 사내 인터넷 게시 및 근로자 개인별 독려 문자발송 등)를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

의무가 면제되며, 건강검진을 거부한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#### 4) 과태료 부과방법

기한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모든 사업장에 과태료가 일괄부 과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근로감독계획 등에 따라 사업장 근로감독 시 건강검진 미실시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### 4. 재검 실시의무와 위반 시 처벌과 재검자 관리방안

#### 1) 건강검진 재검이유와 실시의무

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고혈압, 당뇨 등으로 의사소견서에 의 거 재검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검을 해당 근로자는 받아야 하고, 회사는 재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.

#### 2) 건강검진 재검 미실시에 따른 처벌

건강검진 재검자에 대하여 재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부과가 되므로 사용자는 재검대상자에 대해 필히 재검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## 3) 재검에 대한 횟수제한 관련

재검 근로자가 연속적으로 3차, 4차 이상 재검이 나온 경우에도 원 칙적으로는 횟수제한 없이 재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 이 역시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4) 계속적인 재검자에 대한 관리

만약 3차 이상의 재검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의사소견서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병가휴직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. 해당 근로자가 병가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검결과 해당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면 통상해고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.

- 3 -

Tel: (02) 2633-3633 Fax: (02) 2633-4249

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(질병자의 근로금지·제한) ① 사업주는 감염병,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. ② 사업주는 제1항에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지체 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.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(벌칙)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(1. 제45조제1항·제2항을 위반한 자)

### 5. 결어

2011. 5. 19(목)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였습니다.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지적당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항목이 건강검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다시 한번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 끝.

2015. 8. 31. 노무법인 두레

Tel: (02) 2633-3633 Fax: (02) 2633-4249